1. 합격의 법학원 관리반 수강생 제공용(내용에 관한 문의 시 담당 팀장님에게 문의)
2. 무단전재, 배포, 양도, 개인이나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상 게재 금지

상세 해설

제14회 변호사시험

소장(행정법 부분)

① 메모

0. 목적, 방법

메모는 문제에 대한 답을 기록에서 찾기 위하여 기록을 정리하기 위한 목적이고, 표 형태를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문제에서 묻는 것은 일반적으로 ① 형식적 기재사항, ② 적법요건, ③ 본안판단입니다. 따라서 메모에는 위 3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형식적 기재사항은 표 아래에 작성하거나 답안지에 바로 작성합니다. 이 책에서는 표 아래에 작성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적법요건 쟁점으로 대상적격, 원고적격, 피고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제소기간, 행정심판전치주의, 관할이 있는데, 문제에서 묻는 부분만 포함하고, 이에 대하여 간단히 답안을 결론과 이유를 작성합니다.
본안판단 쟁점으로 크게 절차적 하자, 내용적 하자가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고, 역시 간단히 결론과 이유를 작성합니다. 다만, 변호사시험에서는 절차적 하자를 묻지 않는다고 언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그 경우 절차적 하자 부분은 제외합니다.
하자를 찾는 대상이 처분이므로 처분에 관한 내용을 작성할 부분을 포함합니다. 처분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처분 별로 위 묻는 부분을 각 메모할 수 있도록 표를 그립니다. 당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당사자별로 묻는 부분을 각 메모할 수 있도록 표를 그립니다. 다음 면에서 제14회 변호사시험 공법 기록형을 중심으로 메모를 연습합니다.

1. 합격의 법학원 관리반 수강생 제공용(내용에 관한 문의 시 담당 팀장님에게 문의)
2. 무단전재, 배포, 양도, 개인이나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상 게재 금지

1. 표 그리기

<table>
<tr>
<td>
【 문 제 】
Ⅰ. 행정소장의 작성(50점)
의뢰인 (주)안심고속을 위하여 법무법인 미래의 담당변호사 입장에서 취소소송 소장을 첨부된 양식에 따라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작성하시오.
가. 첨부된 행정소장 양식의 ①부터 ⑧까지의 부분에 들어갈 내용만 기재할 것
나. "2. 이 사건 소의 적법성" 부분(④)에는 제소기간만 기재할 것
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부분(⑤, ⑥)에는 기존 판례 및 학설의 입장에 비추어 설득력 있는 주장을 중심으로 내부회의록 등 기록상 나타난 소송전략을 반영하여 작성하되, 절차적 위법에 관하여는 기재하지 말 것
라. 청구일자(⑦)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모두에 대하여 허용되는 제소기간 내 최종일을 기재할 것
마. 관할법원(⑧)은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법원을 기재할 것
Ⅱ.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의 작성(50점)
의뢰인 김청경을 위하여 법무법인 미래의 담당변호사 입장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첨부된 양식에 따라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작성하시오.
가. 첨부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양식의 ①부터 ⑤까지의 부분에 들어갈 내용만 기재할 것
나. "신청취지" 부분(②)에서 대상조항의 개정 연혁은 기재하지 말 것
다. "2.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부분(④)에는 의뢰인을 위해 합리적으로 제기해 볼 수 있는 위헌 주장을 하되, 내부회의록 등 기록상 나타난 소송전략을 반영할 것
- 2 -
</td>
<td>
【 행정소장 양식 】
소 장
원 고 주식회사 안심고속
대표이사 김안심
주소 · 연락처 (생략)
피 고 ①
주소 · 연락처 (생략)
사건명 ②
청 구 취 지
③
청 구 원 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생략)
2. 이 사건 소의 적법성
④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가. 이 사건 환수처분의 위법성
⑤
나. 이 사건 제외처분의 위법성
⑥
4. 결 론 (생략)
입 증 방 법 (생략)
첨 부 서 류 (생략)
⑦ ○○○○. ○○. ○○.
원고 소송대리인 (생략) (인)
⑧ 귀중
- 4 -
</td>
</tr>
<tr>
<td>문제(2면)</td>
<td>행정소장 양식(4면)</td>
</tr>
</table>

메모는 최상위 행을 이름, 처분, 적법(요건), 본안의 4개 열로 구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의뢰인이 수인이거나 처분이 수개인 경우 이는 행으로 구분하고 각 의뢰인이나 처분별로 적법과 본안을 구분합니다. 본안의 경우 하위에 절차하자, 내용하자의 2개의 열로 구분합니다. 이러한 표를 중심으로 문제와 행정소장 양식을 참고하여 표를 작성합니다.

[문제]

Ⅰ. 가 : 행정소장 양식 참고하여 문제번호를 작성합니다(아래 표 참고).

Ⅰ. 나 : 적법요건은 제소기간만 작성한다고 메모에 표시합니다.

Ⅰ. 다 : 본안은 환수처분, 제외처분이 2건이므로 처분을 2건으로 구분, 표시하고 절차하자는 다투지 않으므로 별도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Ⅰ. 라 : 청구일자는 제소기간 내 최종일입니다.

Ⅰ. 마 : 관할법원은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법원입니다.

형식적 기재사항은 피고(행정소장 양식 ①), 사건명(②), 청구취지(③), 청구일자(⑦), 관할법원(⑧)에 대하여 작성하여야 하므로 표 아래 표시합니다.

이를 기초로 작성한 메모는 다음와 같습니다.

1. 합격의 법학원 관리반 수강생 제공용(내용에 관한 문의 시 담당 팀장님에게 문의)
2. 무단전재, 배포, 양도, 개인이나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상 게재 금지

이름	처분	적법(제소)④	내용⑤, ⑥
㈜안신고속	한수처분		
	제외처분		

피고①
사건명②
청구취지③
제출일⑦
관할(행소9①)⑧

1. 합격의 법학원 관리반 수강생 제공용(내용에 관한 문의 시 담당 팀장님에게 문의)
2. 무단전재, 배포, 양도, 개인이나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상 게재 금지

2. 핵심 부분

행정법에서 핵심 부분은 법률상담일지, 내부회의록, 처분서(재결 있는 경우 재결서까지)입니다. 변호사시험,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은 통상 핵심 부분을 독해하면 참조조문을 참고하여 대략적인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핵심 부분까지 메모한 후 각 쟁점별 결론, 이유를 간단히 기재하고 나머지 기록을 읽으면 됩니다. 순서는 법률상담일지 → 처분서 → 내부회의록으로 권해드리며, 독자가 효과적 또는 효율적으로 생각하는 순서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소장이므로 적법요건은 '적법'이, 본안판단은 '위법'이 결론일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이유는 해당 결론으로 이끄는 법리임을 기억하고 메모에 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가. 법률상담일지

수임번호 제2024-876호	법 률 상 담 일 지 I (행정소송용)		2024. 8. 12.
의 뢰 인	㈜안심고속(대표 김안심)	의뢰인 전 화	031-792-6543
의 뢰 인 주 소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24	의뢰인 E-mail	ansimkim골뱅이ansim.com

상 담 내 용

1. 김안심은 ㈜안심고속의 대표이사인데, 광주시장이 ㈜안심고속에 한 보조금 환수처분 및 보조금 지원 대상 제외처분을 다투고자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다.

2. ㈜안심고속은 2022. 1. 6. ㈜빅토리고속으로부터 시외버스 운송사업을 양도받았다(영업양도·양수 신고 및 수리가 모두 당일에 이루어졌음). ㈜빅토리고속은 2020. 1. 6. 경기도지사로부터 시외버스 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사업을 운영하면서 2020. 1. 6.부터 2022. 1. 5.까지 청소년 할인실적 보조금을 수령하였다. ㈜안심고속도 영업을 양도받은 2022. 1. 6.부터 2024. 1. 5.까지 ㈜빅토리고속과 마찬가지로 청소년 할인실적 보조금을 수령하였다.

3. ㈜빅토리고속과 ㈜안심고속은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시외버스의 청소년 할인실적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토대로 청소년 30% 할인율을 일괄 적용하여 광주시장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그런데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이 ㈜빅토리고속과 ㈜안심고속에 제공한 청소년 할인실적에는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의 실수로 타 회사의 청소년 할인실적의 일부가 추가로 포함되었다.

4. ㈜빅토리고속과 ㈜안심고속이 지급받은 청소년 할인실적 보조금은 각 1억 원씩이다. 그런데 원래 법령상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각 9천만 원씩이었다. 이들이 초과로 수령한 금액은 각 1천만 원씩이다.

5. 광주시장은 ㈜빅토리고속과 ㈜안심고속이 위와 같이 청소년 할인실적 보조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24. 2. 27. ㈜안심고속으로부터 보조금 2억 원 전체를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빅토리고속의 제재사유가 ㈜안심고속에 승계되었다고 보아서 두 회사가 받은 보조금 액수를 합하여 환수처분을 한 것이다. 또한 광주시장은 2024. 2. 27. 처분일로부터 5년간 ㈜안심고속을 청소년 할인실적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처분도 하였다.

- 7 -

법률상담일지 I (7면)

6. ㈜안심고속은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안심고속에 제공한 청소년 할인실적에 타 회사의 청소년 할인실적의 일부가 추가로 포함된 사실을 몰랐고, 설령 제재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빅토리고속의 제재사유가 ㈜안심고속에 승계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4. 3. 15. 위 환수처분 및 제외처분에 대하여 광주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다.

7. ㈜안심고속은 이에 불복하여 2024. 6. 4. 위 환수처분 및 제외처분에 대하여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재결을 받았다.

8. ㈜안심고속은 위 환수처분 및 제외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해 줄 것을 원하고 있다.

법무법인 미래(담당변호사 이새벽)
전화 02-555-1234 팩스 02-555-1289 전자우편 albarbee87골뱅이mirae1awfirm.com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앙대로 50, 법조타운빌딩 9층

- 8 -

법률상담일지 I (8면)

① 원고는 보조금 환수처분과 보조금 지원 대상 제외처분을 다툴 예정입니다.
② 빅토리고속이 2022. 1. 6. 원고에게 시외버스 운송사업 양도하였는데(양도양수 신고, 수리 당일 이행) 양도인은 2020. 1. 6. 경기도지사로부터 면허를 받았고 2020. 1. 6.부터 2022. 1. 5.까지 청소년 할인실적 보조금을 수령하였습니다.
③ 빅토리고속과 원고는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받은 시외버스 청소년 할인실적을 근거로 청소년 할인율 30% 일괄 적용하여 광주시장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았는데, 조합의 실수로 타 회사의 청소년 할인실적 일부가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1. 합격의 법학원 관리반 수강생 제공용(내용에 관한 문의 시 담당 팀장님에게 문의)
2. 무단전재, 배포, 양도, 개인이나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상 게재 금지

④ 빅토리고속과 원고가 지급받은 보조금은 각 1억원이고,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9천만원이었습니다.
⑤ 광주시장은 2024. 2. 27. 원고에게 보조금 2억원 환수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빅토리고속의 제재사유가 안심고속에 승계되었다는 것이며, 같은 날 처분일로부터 5년간 원고를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⑥ 원고는 1) 조합이 제공한 서류에 타 회사 실적이 포함된 것을 몰랐고, 2) 제재사유가 승계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4. 3. 15. 기각되었습니다.
⑦ 원고는 2024. 6. 4.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불복하였으나 청구기간 경과로 각하재결을 받았습니다.
⑧ 원고는 환수처분, 제외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줄 것을 원합니다.

이름	처분	적법(제소)④	내용⑤,⑥
㈜안심고속	환수처분 2억원, 24.2.27./	광주시장 이의신청 기각(24.3.15. 제기), 경기행신위 행신 각하(도과)	타 회사 청소년 할인실적 포함, 빅토리고속 제재사유 승계 실제 9천만원
	제외처분 24.2.27./ 24.2.27.~5년		

피고①
사건명②
청구취지③
제출일⑦
관할(행소9①)⑧

1. 합격의 법학원 관리반 수강생 제공용(내용에 관한 문의 시 담당 팀장님에게 문의)
2. 무단전재, 배포, 양도, 개인이나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상 게재 금지

나-1. 처분서

처분서는 붙임 기록, 우편송달서가 있으면 해당 기록까지 전부 확인합니다.
처분서에서 확인할 부분은 ① 처분명, ② 처분일 및 송달일 ③ 처분명의자(주소), ④ 근거법령, ⑤ 처분내용, ⑥ 처분사유입니다.
처분명은 처분서의 제목, 처분일은 처분서의 시행일자, 송달일은 우편송달서나 교부일 등, 처분명의자는 날인 옆에 있는 명의자, 근거법령은 처분과 관련된 법령을 각 확인합니다.
처분내용은 어떠한 처분인지, 기간이 있는 처분의 경우 기간 등을, 처분사유는 통상 근거법령상 의무위반 부분이 됩니다.
처분명, 처분일은 청구취지와, 송달일은 제소기간 또는 적법하게 재결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와, 처분명의자(주소)는 피고, 관할법원과 각 관련이 있습니다.[1] 변호사시험,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은 통상 처분서를 독해하면 형식적 기재사항을 대부분 기재할 수 있도록 출제되고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쟁점 확인 목적의 참조조문, 포섭 시 필요한 참조조문 확인을 위하여, 처분내용, 처분사유는 본안판단 시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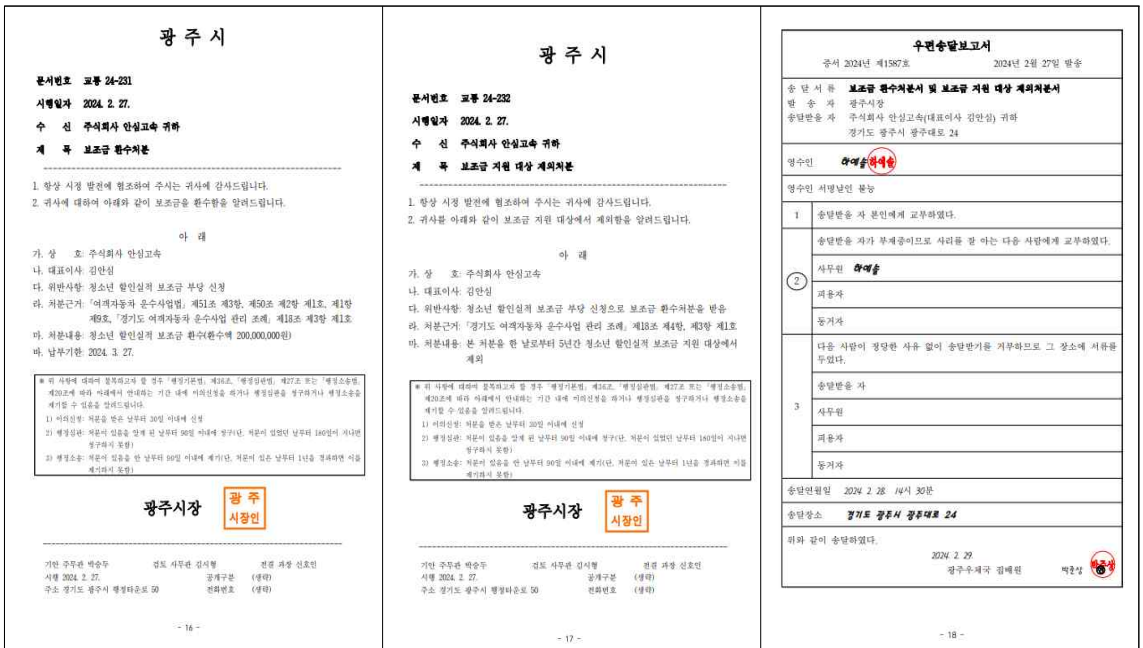

광 주 시

문서번호 교통 24-231
시행일자 2024. 2. 27.
수 신 주식회사 안심고속 귀하
제 목 보조금 환수처분

1. 항상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에 감사드립니다.
2. 귀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조금을 환수함을 알려드립니다.

아 래

가. 상 호: 주식회사 안심고속
나. 대표이사: 김안심
다. 위반사항: 청소년 할인실적 보조금 부당 신청
라. 처분근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제3항, 제50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9호,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8조 제3항 제1호
마. 처분내용: 청소년 할인실적 보조금 환수(환수액 200,000,000원)
바. 납부기한: 2024. 3. 27.

※ 위 사항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할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아래에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이의신청: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2) 행정심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단,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함)
3) 행정소송: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단,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광주시장 광 주 시장인

기안 주무관 박승두 검토 사무관 김지형 전결 과장 신호인
시행 2024. 2. 27. 공개구분 (생략)
주소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전화번호 (생략)

- 16 -

보조금환수 처분서(16면)

광 주 시

문서번호 교통 24-232
시행일자 2024. 2. 27.
수 신 주식회사 안심고속 귀하
제 목 보조금 지원 대상 제외처분

1. 항상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에 감사드립니다.
2. 귀사를 아래와 같이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을 알려드립니다.

아 래

가. 상 호: 주식회사 안심고속
나. 대표이사: 김안심
다. 위반사항: 청소년 할인실적 보조금 부당 신청으로 보조금 환수처분을 받음
라. 처분근거: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8조 제4항, 제3항 제1호
마. 처분내용: 본 처분을 한 날로부터 5년간 청소년 할인실적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위 사항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할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아래에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이의신청: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2) 행정심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단,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함)
3) 행정소송: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단,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광주시장 광 주 시장인

기안 주무관 박승두 검토 사무관 김지형 전결 과장 신호인
시행 2024. 2. 27. 공개구분 (생략)
주소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전화번호 (생략)

- 17 -

지원 대상 제외 처분서(17면)

우편송달보고서
증서 2024년 제1587호 2024년 2월 27일 발송

송달서류	보조금 환수처분서 및 보조금 지원 대상 제외처분서
발송자	광주시장
송달받을 자	주식회사 안심고속(대표이사 김안심) 귀하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24
영수인	하예슬
영수인 서명날인 불능	
1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교부하였다.
2	송달받을 자가 부재중이므로 사리를 잘 아는 다음 사람에게 교부하였다.
	사무원 하예슬
	피용자
	동거자
3	다음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므로 그 장소에 서류를 두었다.
	송달받을 자
	사무원
	피용자
	동거자
송달연월일	2024. 2. 28. 14시 30분
송달장소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24

위와 같이 송달하였다.
2024. 2. 29.
광주우체국 집배원 박종성

- 18 -

지원 대상 제외 처분서(18면)

1) 주소의 경우 기록에 따라 처분서 외의 기록을 확인해보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1. 합격의 법학원 관리반 수강생 제공용(내용에 관한 문의 시 담당 팀장님에게 문의)
2. 무단전재, 배포, 양도, 개인이나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상 게재 금지

처분서는 위부터 아래로 순서대로 읽으면 됩니다.

1) 보조금 환수처분

제목이 “보조금 환수처분”이므로 처분명은 보조금 환수처분입니다.

처분사유는 청소년 할인실적 보조금 부당 신청입니다.

근거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제3항, 제50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9호,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8조 제3항 제1호입니다.

처분내용은 청소년 할인실적 보조금 환수(환수액 200,000,000원), 납부기한 2024. 3. 27.입니다.

처분명의자는 광주시장이므로 피고가 광주시장임을 기재합니다.

시행일이 2024. 2. 27.이므로 청구취지 부분 중 “2024. 2. 27.자 보조금 환수처분”을 특정합니다. 송달일은 2. 28.입니다(18면 우편송달보고서 참조).

주소는 경기도 광주시이므로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법원이 피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 임을 기재합니다(45면 참조).

2) 보조금 지원 대상 제외처분 : 위와 동일하게 읽고 메모합니다.

이름	처분	적법(제소)④	내용⑤,⑥
㈜안심고속	환수처분 2억원(납부 24.3.27.), 24.2.27./2.28. 여객법51③, 50②(1), ①(9), 경기조례 18③(1)	광주시장 이의신청 기각(24.3.15. 제기), 경기행심위 행심 각하(도과)	타 회사 청소년 할인실적 포함, 빅토리고속 제재사유 승계 실제 9천만원
	제외처분 24.2.27./ 24.2.27.~5년 청소년할인실적 보조금부당신청 경기조례 18④,③(1)		

피고①　　광주시장

사건명②　　보조금 환수처분, 보조금 지원 대상 제외처분

청구취지③　　2024. 2. 27.자 보조금 2억원[2] 환수처분, 보조금 지원 대상 제외처분 (2024. 2. 27.~2029. 2. 27.)

제출일⑦

관할(행소9①)⑧　수원지방법원

2) 금액이 내부회의록 확인 후 변경된다.

1. 합격의 법학원 관리반 수강생 제공용(내용에 관한 문의 시 담당 팀장님에게 문의)
2. 무단전재, 배포, 양도, 개인이나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상 게재 금지

나-2. 이의신청 기각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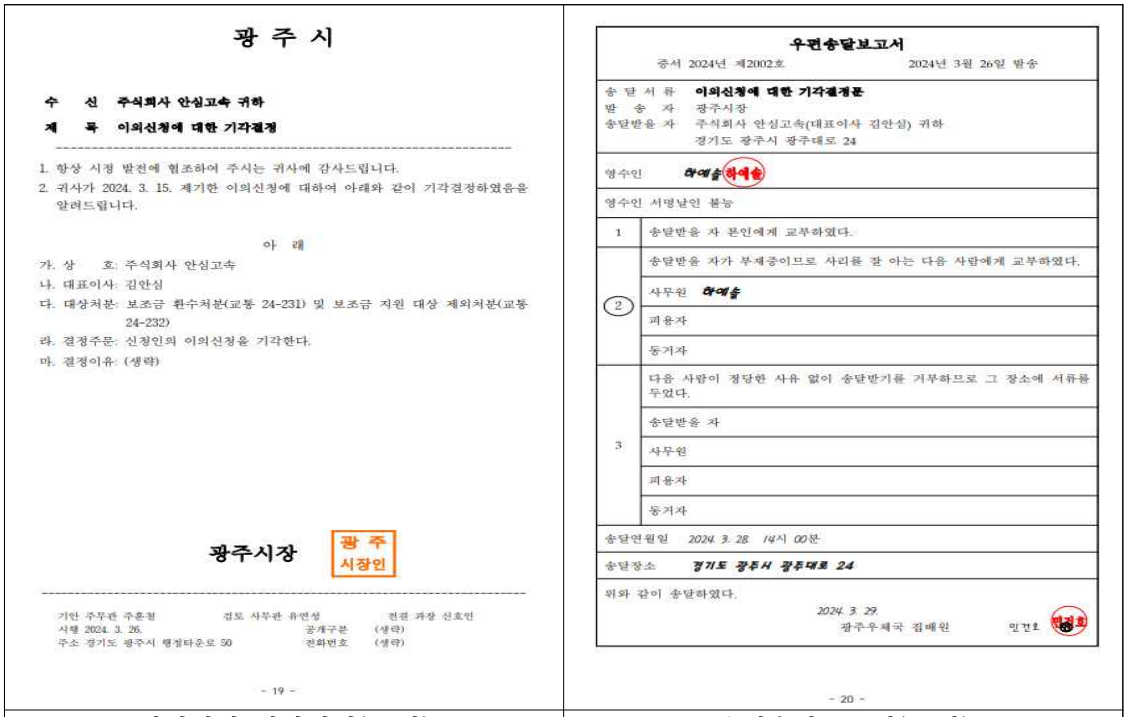

광 주 시

수 신 주식회사 안심고속 귀하
제 목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1. 항상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에 감사드립니다.
2. 귀사가 2024. 3. 15.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각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 래

가. 상 호: 주식회사 안심고속
나. 대표이사: 김안심
다. 대상처분: 보조금 환수처분(교통 24-231) 및 보조금 지원 대상 제외처분(교통 24-232)
라. 결정주문: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마. 결정이유: (생략)

광주시장 광 주 시장인

기안 주무관 주홍철 검토 사무관 유연성 전결 과장 선호연
시행 2024. 3. 26. 공개구분 (생략)
주소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전화번호 (생략)

- 19 -

우편송달보고서

증서 2024년 제2002호 2024년 3월 26일 발송

송달서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문
발송자	광주시장
송달받을 자	주식회사 안심고속(대표이사 김안심) 귀하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24
영수인	하예솔 하예솔
영수인 서명날인 불능	
1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교부하였다.
2	송달받을 자가 부재중이므로 사리를 잘 아는 다음 사람에게 교부하였다.
	사무원 하예솔
	피용자
	동거자
3	다음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므로 그 장소에 서류를 두었다.
	송달받을 자
	사무원
	피용자
	동거자
송달연월일	2024. 3. 28. 14시 00분
송달장소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24
위와 같이 송달하였다.	

2024. 3. 29.
광주우체국 집배원 인건호 인건호

- 20 -

이의신청 기각결정(19면) | 우편송달보고서(20면)

기각결정만 있으므로 처분서와 동일하게 읽고 메모합니다. 법률상담일지Ⅰ에 의하면, 이의신청 자체를 다투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소기간이나 본안에 기재할 것으로 예상하고 메모하시면 됩니다. 행정심판이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된 점 고려하여 이번에는 제소기간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처분	적법(제소)④	내용⑤,⑥
㈜안심고속	환수처분 2억원(납부 24.3.27.), 24.2.27./2.28. 여객법51③, 50②(1), ①(9), 경기조례 18③(1)	광주시장 이의신청 기각(24.3.15. 제기, 3.26. 각하, 3.28. 송달), 경기행심위 행심 각하(도과)	타 회사 청소년 할인실적 포함, 빅토리고속 제재사유 승계 실제 9천만원
	제외처분 24.2.27./ 24.2.27.~5년 청소년할인실적보조금부당신청 경기조례 18④,③(1)		

피고① 광주시장
사건명② 보조금 환수처분, 보조금 지원 대상 제외처분
청구취지③ 2024. 2. 27.자 보조금 2억원 환수처분, 보조금 지원 대상 제외처분(2024. 2. 27.~2029. 2. 27.)
제출일⑦
관할(행소9①)⑧ 수원지방법원

1. 합격의 법학원 관리반 수강생 제공용(내용에 관한 문의 시 담당 팀장님에게 문의)
2. 무단전재, 배포, 양도, 개인이나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상 게재 금지

나-3. 행정심판 각하재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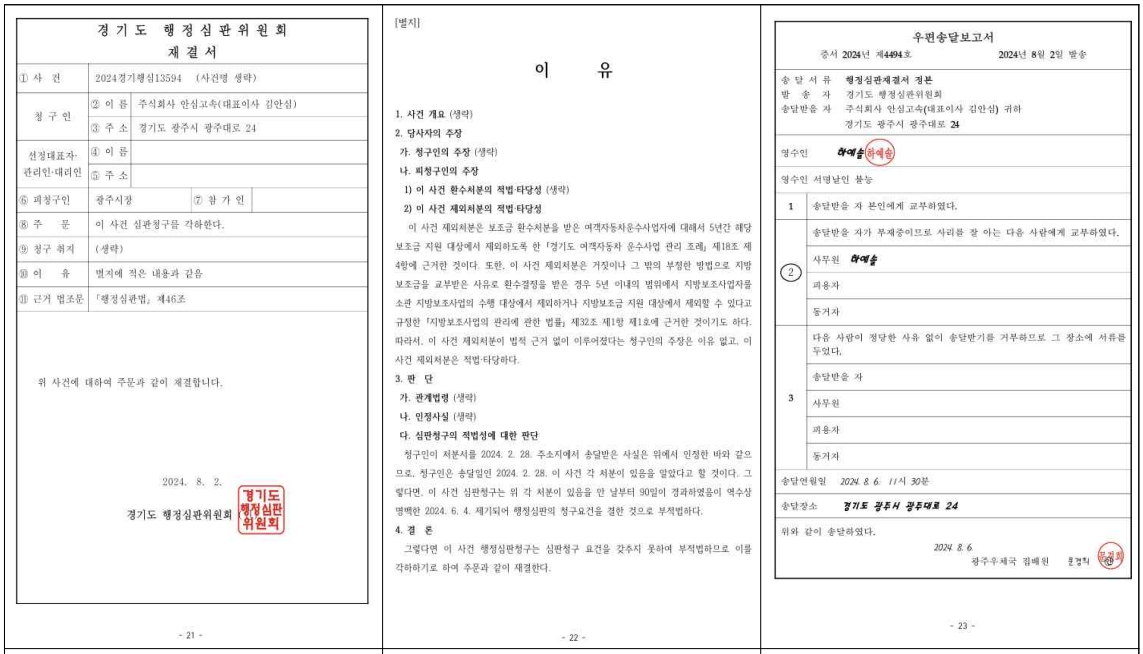

경 기 도 행 정 심 판 위 원 회
재 결 서

① 사 건	2024경기행심13594 (사건명 생략)	
청 구 인	② 이 름	주식회사 안심고속(대표이사 김안심)
	③ 주 소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24
선정대표자·관리인·대리인	④ 이 름	
	⑤ 주 소	
⑥ 피청구인	광주시장	⑦ 참 가 인
⑧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⑨ 청구 취지	(생략)	
⑩ 이 유	별지에 적은 내용과 같음	
⑪ 근거 법조문	「행정심판법」 제46조	

위 사건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합니다.

2024. 8. 2.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 21 -

[별지]

이 유

1. 사건 개요 (생략)
2. 당사자의 주장
가. 청구인의 주장 (생략)
나. 피청구인의 주장
1) 이 사건 환수처분의 적법·타당성 (생략)
2) 이 사건 제외처분의 적법·타당성
이 사건 제외처분은 보조금 환수처분을 받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해서 5년간 해당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8조 제4항에 근거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제외처분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환수결정을 받은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지방보조사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외처분이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제외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판 단
가. 관계법령 (생략)
나. 인정사실 (생략)
다.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청구인이 처분서를 2024. 2. 28. 주소지에서 송달받은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청구인은 송달일인 2024. 2. 28.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4. 6. 4. 제기되어 행정심판의 청구요건을 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는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22 -

우편송달보고서

증서 2024년 제4494호 2024년 8월 2일 발송

송 달 서 류	행정심판재결서 정본
발 송 자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송달받을 자	주식회사 안심고속(대표이사 김안심) 귀하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24
영수인	하예슬 (하예슬)
영수인 서명날인 불능	
1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교부하였다.
②	송달받을 자가 부재중이므로 사리를 잘 아는 다음 사람에게 교부하였다.
	사무원 하예슬
	피용자
	동거자
3	다음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므로 그 장소에 서류를 두었다.
	송달받을 자
	사무원
	피용자
	동거자
송달연월일	2024. 8. 6. 11시 30분
송달장소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24

위와 같이 송달하였다.

2024. 8. 6.

광주우체국 집배원 문경식 (문경식)

- 23 -

행정심판 재결서(21면)	행정심판 이유(22면)	우편송달보고서(23면)

행정심판의 경우, 재결서, 이유를 순서대로 살피면 됩니다.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재결하였으므로 그 이유를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제소기간 검토에, 이유 중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본안 검토에 활용합니다.

사건명은 2024경기행심13594입니다.
청구인은 원고, 피청구인은 피고입니다.
각하되었고 근거법령은 행정심판법 제46조입니다.
재결일은 2024. 8. 2., 송달일은 8. 6. 심판기관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이유 중 1) 이 사건 제외처분의 적법, 타당성 부분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환수결정이 있었고, 위 환수결정을 사유로 지원 대상 제외결정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외에 지방보조사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법령으로 기재하였습니다.
2) 각하 부분에 관해서는 2024. 2. 28. 주소지에 송달받아 같은 날 처분이 있음을 알았고, 심판청구가 2024. 6. 4. 제기되어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고 기재하였습니다.

1. 합격의 법학원 관리반 수강생 제공용(내용에 관한 문의 시 담당 팀장님에게 문의)
2. 무단전재, 배포, 양도, 개인이나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상 게재 금지

이름	처분	적법(제소)④	내용⑤,⑥
㈜안심고속	환수처분 2억원(납부 24.3.27.), 24.2.27./2.28. 여객법51③, 50②(1), ①(9), 경기조례 18③(1)	광주시장 이의신청 기각(24.3.15. 제기, 3.26. 각하, 3.28. 송달), 경기행심위 행심(2024경기행심12345) 각하(도과 6.4. 제기, 8. 6. 송달), 행심법46, 청구기간에 이의신청 고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 타 회사 청소년 할인실적 포함, 빅토리고속 제재사유 승계 실제 9천만원
	제외처분 24.2.27./ 24.2.27.~5년 청소년할인실적보조금부당신청 경기조례 18④,③(1) 지방보조법32①(1)		환수결정에 근거하여 처분

피고① 광주시장
사건명② 보조금 환수처분, 보조금 지원 대상 제외처분
청구취지③ 2024. 2. 27.자 보조금 2억원 환수처분, 보조금 지원 대상 제외처분(2024. 2. 27.~2029. 2. 27.)
제출일⑦
관할(행소9①)⑧ 수원지방법원

1. 합격의 법학원 관리반 수강생 제공용(내용에 관한 문의 시 담당 팀장님에게 문의)
2. 무단전재, 배포, 양도, 개인이나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상 게재 금지

다. 내부회의록

내부회의록은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 내부회의록은 통상 팀을 이루는 변호사 간에 대화를 하는 형식으로 구성되는데, 일방이 의문을 제기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그렇지 않을까요?', '그 부분을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등 취지의 답변을 한다면 그 부분은 쟁점이고 답변한 변호사가 생각한 방향으로 법리를 구성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편합니다.

공법 기록형이 숙달되면 메모를 하며 비어 있는 부분을 채우고 예단한 답이 맞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살펴보는 식으로 읽는 것이 좋습니다.

1. 합격의 법학원 관리반 수강생 제공용(내용에 관한 문의 시 담당 팀장님에게 문의)
2. 무단전재, 배포, 양도, 개인이나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상 게재 금지

법무법인 미래 내부회의록 I (행정소송용) 일 시: 2024. 8. 12. 15:00~17:00 장 소: 법무법인 미래 중회의실 참석자: 최하늘 변호사(송무팀장), 이새벽 변호사(담당변호사) **최 변호사:** 지금부터 수임번호 제2024-876호 사건에 대한 소송 전략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안심고속이 소송을 의뢰했다면서요? **이 변호사:** 네, 의뢰인회사는 광주시장이 한 보조금 환수처분 및 보조금 지원 대상 제외처분을 다투려고 합니다. **최 변호사:** 의뢰인회사가 해당 처분을 받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되나요? **이 변호사:** 원래 ㈜빅토리고속이 2020. 1. 6.에 경기도지사로부터 시외버스 운송사업면허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빅토리고속은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빅토리고속이 운행하는 시외버스의 청소년 할인실적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아, 청소년 30% 할인율을 일괄 적용하여 계산한 보조금을 광주시장으로부터 받아왔다고 합니다. 이 보조금은 청소년 유임할인과 같은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을 보전하는 보조금입니다. **최 변호사:** 그 부분은 ㈜빅토리고속에 관한 이야기인데, 의뢰인회사와 무슨 관련이 있나요? 의뢰인회사가 영업양도를 받은 시점이 언제이죠? **이 변호사:** 의뢰인회사는 2022. 1. 6.에 ㈜빅토리고속으로부터 시외버스 운송사업을 양도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도인과 마찬가지로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의뢰인회사가 운행하는 시외버스의 청소년 할인실적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토대로 청소년 할인실적 보조금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최 변호사:** ㈜빅토리고속과 의뢰인회사가 각각 받은 청소년 할인실적 보조금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이 보조금에 대한 환수처분이 이루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변호사:** ㈜빅토리고속과 의뢰인회사는 각각 2년 동안 1억 원씩의 청소년 할 - 9 -	광주시장이 한 보조금 환수처분 및 보조금 지원 대상 제외처분을 다투려고 합니다. → **피고, 처분 특정** 그 외 내용은 법률상담일지 내용의 정리
내부회의록(9면)	
인실적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이들 회사에 통보한 청소년 할인실적 자료에 일부 오류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실수로 다른 회사의 청소년 할인실적을 ㈜빅토리고속과 의뢰인회사의 실적에 포함하여 통보했습니다. **최 변호사:** 청소년 할인실적에 일부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빅토리고속이나 의뢰인회사도 알고 있었나요? **이 변호사:** 의뢰인회사는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의뢰인회사에 통보한 실적대로만 보조금 지원신청을 해왔고, 그 통보 내용에 오류가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의뢰인회사가 확인해 보니 ㈜빅토리고속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오류로 인해 ㈜빅토리고속과 의뢰인회사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초과하여 받게 된 보조금은 각 1천만 원씩입니다. 이렇게 추가로 받게 된 보조금 액수는 정확하게 특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최 변호사:** 초과된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그런데 광주시장이 환수처분을 한 금액은 얼마인가요? 초과된 금액만인가요? **이 변호사:** 아닙니다. 광주시장은 두 회사에 지급한 청소년 할인실적 보조금 전액인 2억 원에 대해서 환수처분을 했습니다. **최 변호사:** 의뢰인회사가 여러모로 억울한 점이 있겠네요. 오류가 있는 부분이 받은 보조금의 일부에 불과한데 전액을 환수하라고 하는 점도 그렇고, 양도인의 위반 부분에 대해서도 양수인인 의뢰인회사가 모두 책임지라고 하는 점도 그렇네요. 보조금 환수처분의 성격을 잘 검토해 보고, 이처럼 양수인이 모두 책임지는 것이 맞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변호사:**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수처분 전체의 취소를 구할지, 아니면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취소를 구할지도 고민입니다. **최 변호사:** 환수처분에 재량이 인정되는지 검토하고, 만약 일부취소판결이 가능하다면 일부취소만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판례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란 운송사업자 등이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고, 법령에 따라 보조금을 - 10 -	의뢰인회사는 경기도 버스운송조합이… 오류가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 **원고와 빅토리고속의 오류 미인지** 이렇게 추가로 받게 된 보조금 액수는 정확하게 특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 **금 1천만원씩 초과 특정** 환수처분에 재량이 인정되는지… 일부취소만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재량행위 검토, 일부취소** 판례는… 광주시장으로부터 받은 부분은 다툴 실익이 적을 것 같습니다(11면). → **판례 기재, 11면의 다음 답변과 더하여 금 1억9천만원 일부취소**
내부회의록(10면)	

1. 합격의 법학원 관리반 수강생 제공용(내용에 관한 문의 시 담당 팀장님에게 문의)
2. 무단전재, 배포, 양도, 개인이나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상 게재 금지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회사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보조금을 초과하여 광주시장으로부터 받은 부분은 다툴 실익이 적을 것 같습니다. **이 변호사:** 알겠습니다. 환수처분의 대상이 된 총 2억 원 중 위법하다고 보이는 부분은 1억 9천만 원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일부취소를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 변호사:** 정리해 보면 환수처분의 법적 성질을 논한 다음에, 처분 중 일부에 처분사유가 부존재함을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일부취소를 구하는 근거를 적시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 제외처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제외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만한 부분이 있나요? **이 변호사:** 우선 제외처분의 법적 성질이 문제됩니다. 광주시장은 당초에 제외처분을 할 때에는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8조 제4항을 근거로 제시하다가, 행정심판 단계에 와서 「지방보조사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런데 둘 중 어느 법령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제외처분의 법적 성질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 변호사:** 그렇군요. 제외처분의 법적 성질이 달라진다면 이에 따라 위법성을 주장하는 논리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변호사:** 네, 맞습니다. 일단 두 법령의 적용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8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경우에 이 규정의 효력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조례의 위임 근거규정은 찾기가 힘든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2항이 위임 근거규정이 될 수 있는지는 문제될 것 같습니다. **최 변호사:** 네, 검토 부탁드립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유형에 대한 논의는 불필요할 것 같으니 다투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보조사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의 적용과 관련해서 주장할 만한 쟁점이 있을까요? - 11 -	알겠습니다.… 일부취소를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변) 정리해 보면… 적시하면 되겠습니다. **→ 환수처분 법적 성질→처분사유 부존재(일부처분에만)→일부취소 근거 적시** 우선 제외처분의… 제외처분의 법적 성질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 제외처분 시작, 근거별 법적 성질 검토** 일단 두 법령의 적용 가능성을… 위임 근거규정이 될 수 있는지는 문제될 것 같습니다. **→ 법률과 조례 간 위임 근거규정을 논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유형에… 불필요할 것 같으니 다투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유형 검토 제외**
내부회의록(11면)	
이 변호사: 광주시장이 행정심판 단계에 와서 「지방보조사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을 처분사유로 추가하였는데 이것이 허용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최 변호사:** 그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추가가 허용되는 경우를 대비한 주장도 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이 변호사:** 네, 맞습니다. 「지방보조사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2024. 1. 15. 제정되어 2024. 2. 16.부터 시행되었는데, 이 시점은 이미 의뢰인회사가 1억 원의 보조금을 수령한 이후입니다. 위 법 제32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2024. 2. 27.자 제외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 변호사:** 좋습니다. 만약 「지방보조사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보았을 때 추가적으로 주장할 쟁점은 없나요? **이 변호사:** 그렇다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제외처분의 기준을 정한 「지방보조사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에 따른 재량권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최 변호사:** 좋습니다. 그리고 당초 운송사업면허처분은 경기도지사가 했는데, 환수처분 및 제외처분은 광주시장이 했네요. 이 부분은 문제가 없나요? **이 변호사:** 네, 법령을 확인해 보았는데 법령상 환수처분 및 제외처분 권한은 광주시장에게 위임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최 변호사:** 그 외에 소의 적법성에 관해 검토할 점은 없을까요? **이 변호사:**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재결을 했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소기간에서 이 점을 언급하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이의신청 기각결정이나 행정심판재결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 변호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을 작성할 때 「행정기본법」 관련 법리도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끝> - 12 -	광주시장이… 처분사유로 추가하였는데 이것이 허용되는지가 문제됩니다. **→ 처분사유 추가 가부 검토** 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필요할 텐데요. **→ 처분사유 추가 허용 시 반박사유 검토** 「지방보조사업의… 검토해 보겠습니다. **→ 처분시점에 대한 검토** 만약 「지방보조사업의…(최변) 그렇다면 재량권의 일탈… 검토하겠습니다. **→ 재량권의 일탈남용 검토, 시행령 제19조의 법적 성질 확인 후 재량권행사 검토** 네, 법령을 확인해보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 주체의 하자 없음**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언급하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청구기간 도과 다툼** 그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대상적격 특정**
내부회의록(12면)	

1. 합격의 법학원 관리반 수강생 제공용(내용에 관한 문의 시 담당 팀장님에게 문의)
2. 무단전재, 배포, 양도, 개인이나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상 게재 금지

이름	처분	적법(제소)④	내용⑤,⑥
㈜안심고속	환수처분 2억원(납부 24.3.27.), 24.2.27./2.28. 여객법51③, 50②(1), ①(9), 경기조례 18③(1)	광주시장 이의신청 기각(24.3.15. 제기, 3.26. 각하, 3.28. 송달), 경기행심위 행심(2024경기행심12345) 각하(도과 6.4. 제기, 8.6. 송달), 행심법46, 청구기간에 이의신청 고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 - 원고와 빅토리고속의 오류 머인지 타 회사 청소년 할인실적 포함, 빅토리고속 제재사유 승계 실제 9천만원 재량행위 건토, 일부취소 : 1억9천만원, 처분사유 부존재 건토
	제외처분 24.2.27./ 24.2.27.~5년 청소년할인실적보조금부당신청 경기조례 18④,③(1) 지방보조법32①(1)		환수결정에 근거하여 처분 경기조례, 지방보조법 양자 건토, 지방보조법 처분사유 추가 가부 건토, 추가 가능한 경우에 대한 반박법리(처분시전, 재량권 일탈남용) 건토

피고① 광주시장

사건명② 보조금 환수처분, 보조금 지원 대상 제외처분

청구취지③ 2024. 2. 27.자 보조금 2억원 환수처분 중 금 1억9천만원 환수처분 부분, 보조금 지원 대상 제외처분(2024. 2. 27.~2029. 2. 27.)

제출일⑦ 2025. 11. 4.

관할(행소9①)⑧ 수원지방법원

1. 합격의 법학원 관리반 수강생 제공용(내용에 관한 문의 시 담당 팀장님에게 문의)
2. 무단전재, 배포, 양도, 개인이나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상 게재 금지

3. 1차 정리★

1차 정리는 처분별로 적법요건, 본안판단을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가. 적법요건(제소기간)
제소기간에 관하여 행정심판의 각하재결이 부당하다는 판단이 있었으므로, 각하재결임에도 불구하고 재결서정본 송달일을 기준으로 90일 기산하여 제소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처분	적법(제소)④	
환수처분 2억원(납부 24.3.27.), 24.2.27./2.28. 여객법51③, 50②(1), ①(9), 경기조례 18③(1)	광주시장 이의신청 기각(24.3.15. 제기, 3.26. 각하, 3.28. 송달), 경기행심위 행심(2024경기행심12345) 각하(도과 6.4. 제기, 8.6. 송달), 행심법46, 청구기간에 이의신청 고려×	결론 : 제소기간 ~11.4. 이유 : 행심 각하재결이 부당→재결서정본 송달일(8.6.)부터 90일 기산
제외처분 24.2.27./ 24.2.27.~5년 청소년할인실적보 조금부당신청 경기조례 18④,③(1) 지방보조법32①(1)		

나. 내용하자
1) 환수처분

처분	내용⑤,⑥	
환수처분 2억원(납부 24.3.27.), 24.2.27./2.28. 여객법51③, 50②(1), ①(9), 경기조례 18③(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 - 원고와 빅토리고속의 오류 미인지 타 회사 청소년 할인실적 포함, 빅토리고속 제재사유 승계 실제 9천만원 재량행위 검토, 일부취소 : 1억9천만원, 처분사유 부존재 검토	결론 : 위법취소 이유 1) 재량행위? 2) 일부 처분의 사유 부존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x - 1억9천만원 부당 3) 취소근거

환수처분에 대하여는 결론은 위법취소일 것이고, 이유의 논리가 1) 재량행위 여부 판단, 2) 일부처분에 대한 처분사유 부존재 검토, 3) 근거 적시에 따르라고 하였습니다. 개별 논리에 대한 소결론은 1) 재량행위 해당, 2) 일부처분에 대한 처분사유 부존재일 것입니다.

1. 합격의 법학원 관리반 수강생 제공용(내용에 관한 문의 시 담당 팀장님에게 문의)
2. 무단전재, 배포, 양도, 개인이나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상 게재 금지

답안 작성 시 이유를 작성하는데, 1)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법리에 따라 문언 기준으로 검토하면 되고 이는 참조조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2) 일부처분에 대한 처분사유 부존재는 '허위'에 관한 판례를 주었고 1억9천만원을 취소하라고 하였으므로, 위 결론에 맞추어 참조조문 검토하여 이유를 작성하면 됩니다.
※ 각 쟁점에 관한 법리를 모르면 답을 작성하기 곤란할 수 있고, 애초에 쟁점이 있는지 여부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의 핵심부분에 따라 메모를 하고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법요건의 경우 '적법' 결론, 청구원인의 경우 '위법' 결론임을 인지한다면, 쟁점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된 쟁점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논리'를 창작하는 방식으로 답안 작성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해당 논리가 맞다면 점수를 받을 수 있고, 해당 논리를 틀리더라도 쟁점, 기본 법리, 결론을 작성하였을 것이므로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3)]

2) 보조금 지원 대상 제외처분

처분	내용⑤,⑥	
제외처분 24.2.27./ 24.2.27.~5년 청소년할인실적보조금부당신청 경기조례 18④,③(1) 지방보조법32①(1)	환수결정에 근거하여 처분 경기조례, 지방보조법 양자 검토, 지방보조법 처분사유 추가 가부 검토, 추가 가능한 경우에 대한 반박법리(처분시점, 재량권 일탈남용) 검토	결론 : 위법취소 이유 1) 재량행위? 2) 처분사유 추가 2)-1 불가(법리) 2)-2 가능하더라도 하자(입법 전 보조금교부) - 1억9천만원 부당 2)-3 재량권 일탈남용

보조금 지원 대상 제외처분에 대하여도 결론은 위법취소입니다.
이유로 법적 성질 검토 후 처분사유 추가 가능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고, 가능하더라도 추가된 처분사유의 입법 전에 보조금을 교부했던 부분과 재량권이 적절히 행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반박하라고 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답안을 작성하면 됩니다.

다. 형식적 기재사항
형식적 기재사항 역시 표 아래 이미 다 정리되어 있을 것입니다.

피고①　　광주시장
사건명②　　보조금 환수처분[4)] 등 취소 청구의 소

3) 변호사시험은 답을 전부 맞혀야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다. 부분점수를 모아 합격하는 시험인 점을 항상 기억하자.

1. 합격의 법학원 관리반 수강생 제공용(내용에 관한 문의 시 담당 팀장님에게 문의)
2. 무단전재, 배포, 양도, 개인이나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상 게재 금지

청구취지③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4. 2. 27.자 보조금 2억원 환수처분 중 1억 9천만원 환수처분 부분, 보조금 지원 대상 제외처분(2024. 2. 27.~2029. 2. 27.)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제출일⑦ 2025. 11. 4.

관할(행소9①)⑧ 수원지방법원

4) 보조금 지원 대상 제외처분을 넣어도 된다.

1. 합격의 법학원 관리반 수강생 제공용(내용에 관한 문의 시 담당 팀장님에게 문의)
2. 무단전재, 배포, 양도, 개인이나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상 게재 금지

4. 기타 기록

기타 기록은 ① 메모에 구체적으로 포섭해야 하는 내용, ② 재량의 일탈·남용 판단 부분에 관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기타 기록을 읽을 때에는 메모 중 어떤 부분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고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번 문제에서 기타 기록 부분이 없었습니다.

5. 참조조문

메모를 마치면 참조조문을 펼쳐놓고 메모와 참조조문을 확인하며 답안을 작성합니다. 참조조문을 읽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처분서 기재 조문 → 위 조문에 표시된 조문 → 쟁점 관련 조문(제목 위주 확인)

가. 처분서 기재 조문

1) 환수처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보조금의 사용 등) 제3항, 제50조(재정 지원) 제3항, 제2항제1호, 제1항제9호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8조(재정지원 관리 및 환수) 제3항 제1호

2) 지원 대상 제외처분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8조(재정지원 관리 및 환수) 제4항, 제3항 제1호

지방보조사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제외 등) 제1항제1호

나. 위 각 조문에 표시된 조문

다. 쟁점 관련 조문

1. 합격의 법학원 관리반 수강생 제공용(내용에 관한 문의 시 담당 팀장님에게 문의)
2. 무단전재, 배포, 양도, 개인이나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상 게재 금지

② 내용 작성

1. 형식적 기재사항

메모 하면서 전부 작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바로 작성하면 됩니다. 보통 1차 정리 때 대부분 작성할 수 있도록 출제되고 있고, 이번에도 동일하게 출제되었습니다.

2. 적법요건

가. 작성 가이드

처분이 2개이나 같은 날 있던 처분이고 이의신청, 행정심판이 한 건으로 하여 진행되었으므로 목차는 제소기간만 작성해도 됩니다.
해당 목차 아래 법리, 포섭으로 각 목차를 동등하게 편성합니다.
법리 부분에는 행정소송법의 관련 조문을 베낀 후, 쟁점이 되는 판례를 기재합니다. 참조조문을 기재해야 하는 경우 적절한 위치를 찾아서 하되 잘 모른다면 판례 뒤에 기재합니다.
포섭 부분에는 주어, 일자, 상대방, 목적, 행위 순으로 문장을 작성하되 포섭에 부합하는 법리의 키워드를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참조조문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해당 내용 끝에 괄호 내 참조조문 번호만 기재합니다.

나. 메모와 작성방법

처분	적법(제소)④	
환수처분 2억원(납부 24.3.27.), 24.2.27./2.28. 여객법51③, 50②(1), ①(9), 경기조례 18③(1)	광주시장 이의신청 기각(24.3.15. 제기, 3.26. 각하, 3.28. 송달), 경기행심위 행심(2024경기행심12345) 각하(도과 6.4. 제기, 8.6. 송달), 행심법46, 청구기간에 이의신청 고려×	결론 : 제소기간 ~11.4. 이유 : 행심 각하재결이 부당→재결서정본 송달일(8.6.)부터 90일 기산
제외처분 24.2.27./ 24.2.27.~5년 청소년할인실적보 조금부당신청 경기조례 18④,③(1) 지방보조법32①(1)		

위 메모를 세로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합격의 법학원 관리반 수강생 제공용(내용에 관한 문의 시 담당 팀장님에게 문의)
2. 무단전재, 배포, 양도, 개인이나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상 게재 금지

다. 목차 및 내용

④ 이 사건 소의 적법성

1. 법리

법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청의 처분(「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행정기본법 제36조 제1항).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제2항에 따른 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

판례[5]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행정심판법(2010. 1. 25. 법률 제996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그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②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그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 합격의 법학원 관리반 수강생 제공용(내용에 관한 문의 시 담당 팀장님에게 문의)
2. 무단전재, 배포, 양도, 개인이나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상 게재 금지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2. 포섭

포섭[6]
원고는 2024. 2. 28. 각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3. 1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의신청이 3. 26. 각하되어 3. 28. 이를 송달받았고 이로부터 90일 이내인 6. 4.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24. 8. 2. 원고가 2. 28.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며 이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다고 하여 위 청구에 대하여 각하재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기본법에 의하면 이의신청 결과통지를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부당합니다. 원고는 적법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24. 8. 2.자 각하재결을 8. 6. 송달받았으므로, 제소기간은 위 8. 6.로부터 90일이 되는 11. 4. 24:00까지입니다. 원고는 2024. 11. 4. 이 사건 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을 준수하였습니다.

3. 소결

이 사건 청구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였으므로 적법합니다.

---

5) 다음 판결 역시 같은 취지로 이해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2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 내용과 그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두52980 판결).

6) 16, 17면의 처분서에 행정기본법 제36조가 명시되어 있다.

1. 합격의 법학원 관리반 수강생 제공용(내용에 관한 문의 시 담당 팀장님에게 문의)
2. 무단전재, 배포, 양도, 개인이나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상 게재 금지

3. 본안

가. 메모

처분	내용⑤,⑥	
환수처분 2억원(납부 24.3.27.), 24.2.27./2.28. 여객법51③, 50②(1), ①(9), 경기조례 18③(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 - 원고와 빅토리고속의 오류 미인지 타 회사 청소년 할인실적 포함, 빅토리고속 제재사유 승계 실제 9천만원 재량행위 검토, 일부취소 : 1억9천만원, 처분사유 부존재 검토	결론 : 위법취소 이유 1) 기속행위 : 해당 2) 일부 처분의 사유 부존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x - 1억9천만원 부당 3) 취소근거
제외처분 24.2.27./ 24.2.27.~5년 청소년할인실적보조금부당신청 경기조례 18④,③(1) 지방보조법32①(1)	환수결정에 근거하여 처분 경기조례, 지방보조법 양자 검토, 지방보조법 처분사유 추가 가부 검토, 추가 가능한 경우에 대한 반박법리(처분시점, 재량권 일탈남용) 검토	결론 : 위법취소 이유 1) 법적 성질 : 처분 2) 처분사유 추가 2)-1 불가(법리) 2)-2 가능하더라도 하자(입법 전 보조금교부) - 1억9천만원 부당 2)-3 재량권 일탈남용

메모를 환수처분과 제외처분으로 나누어 쓴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나. 목차 및 내용

⑤ 이 사건 환수처분의 위법성

1. 이 사건 환수처분의 법적 성질
가. 법리

판례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

1. 합격의 법학원 관리반 수강생 제공용(내용에 관한 문의 시 담당 팀장님에게 문의)
2. 무단전재, 배포, 양도, 개인이나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상 게재 금지

조 제3항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환수처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그 지급받은 보조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는 기속행위(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나. 포섭

참조조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7] 제51조 제3항).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8조 제3항 제1호)

포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도록 규정합니다.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역시 같은 경우에 대하여 지원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위 문언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환수처분은 기속행위에 해당합니다.

2. 처분사유 부존재(일부처분)

가.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관한 부분

1) 법리

판례

7) 여객자동차법으로 약칭할 수 있다(3면 작성요령 참조).

1. 합격의 법학원 관리반 수강생 제공용(내용에 관한 문의 시 담당 팀장님에게 문의)
2. 무단전재, 배포, 양도, 개인이나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상 게재 금지

마을버스 운수업자 甲이 유류사용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과다 지급받은 데 대하여 관할 시장이 甲에게 부정수급기간 동안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회수하는 내용의 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고, 위 규정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까지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2) 포섭

참조조문 : 기속행위 판단 시와 같은 취지이므로 조항만 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제3항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8조 제3항 제1호

포섭
피고는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고, 위 규정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까지 반환하도록 명할 수 없습니다.

나. ㈜빅토리고속이 지급받은 보조금에 관한 부분

1) 법리

판례
관할 행정청은 양수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양수인에 대하여 불법증차 차량에 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에 따른 양수인의 책임 범위는 지위승계 후 발생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에 한정된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두55968 판결).

2) 포섭

포섭
㈜빅토리고속은 2020. 1. 6.부터 2022. 1. 5.까지 청소년 할인실적 보조금을 수령한 후 2022. 1. 6. 원고에게 시외버스 운송사업을 양도하여 같은 날 신고, 수리가 이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위 청소년 할인실적 보조금은 원고의 지위승계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빅토리고속이 수령한 보조금에 대하여 반환을 명한 것은 위법합니다.

1. 합격의 법학원 관리반 수강생 제공용(내용에 관한 문의 시 담당 팀장님에게 문의)
2. 무단전재, 배포, 양도, 개인이나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상 게재 금지

3. 취소하여야 하는 금액

가. 법리

판례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처분의 적법 여부는 과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누8459 판결).

나. 포섭

포섭
원고가 제출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면, 피고는 반환을 명한 금 2억원 중 1) 정상적으로 지급한 금 1억 8천만원, 2) ㈜빅토리고속의 부분으로 처분한 금 1천만원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1억 9천만원에 대하여 취소하여야 합니다.

4.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피고가 반환을 명한 금액 중 금 1억 9천만원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합니다.

⑥ 이 사건 제외처분의 위법성

1. 조례의 유효 여부

가. 법리

법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판례
지방자치법 제22조, 제9조 제1항,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그 경우라도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위임 없이 제정된 조례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추81 판결).

1. 합격의 법학원 관리반 수강생 제공용(내용에 관한 문의 시 담당 팀장님에게 문의)
2. 무단전재, 배포, 양도, 개인이나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상 게재 금지

나. 포섭[8)]

참조조문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2항[9)]).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환수처분을 받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해서 처분을 한 날로부터 5년간 해당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8조 제4항).

포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2항은 보조의 대상 및 방법, 보조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시·도의 조례로 위임하고 있을 뿐, 보조금 지원 대상 제외에 대하여는 조례에 위임하지 않습니다. 설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보조금 환수에 대한 규정을 고려하더라도 역시 보조금 지원 대상 제외에 대하여는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법률은 보조금 지원 대상 제외처분의 근거인 조례의 위임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한편, 보조금 지원 대상 제외처분은 주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이므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 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없으므로 무효입니다.

2.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위법성

가. 법리

판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려면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8) 조례의 위법 여부 판단에서의 조례의 유형 중 초과조례로 볼 여지가 있다. 다만, 이 경우 침익초과조례에 대하여는 법률의 위임근거는 있으나 상위법령의 제한범위를 초과하여 무효라고 판시하는 경우가 보여(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51 판결 참조), 논리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또한, 초과조례로 보려면 동일한 사항을 동일한 목적으로 규율하여야 하는데 근거법률은 보조금 지원이나 상환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고 제재처분에 대한 규정으로 보기 어려우며 내부회의록 11면에서도 법률의 위임근거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여 본 해설에서는 초과조례로 보지 않았음을 밝혀 둔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가 제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부분도 같이 고려할 수 있다).
다만, 보조의 '방법'이나 '필요한 사항'에 지원 대상 제외까지 포함한다고 포섭하여 초과조례로 보고 위임근거는 있되 법령의 상한을 초과한다는 식으로 논의할 수도 있어 보인다(결론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9) 내부회의록 11면에서 주어진 조문이다. 보조금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율할 수 있도록 규정하므로 이에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포함되는지 논의하라는 취지로 이해되어, 포섭에서 주로 다루었다.

1. 합격의 법학원 관리반 수강생 제공용(내용에 관한 문의 시 담당 팀장님에게 문의)
2. 무단전재, 배포, 양도, 개인이나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상 게재 금지

중대한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므로, 행정청이 위법하여 무효인 조례를 적용하여 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려면 그 규정이 행정처분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그에 따른 행정처분의 중요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귀착되고, 또한 그 규정의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에 따른 행정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귀착되어야 하는바, 일반적으로 조례가 법률 등 상위법령에 위배된다는 사정은 그 조례의 규정을 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그 조례 규정의 위법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조례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26285 판결).

나. 포섭

참조조문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2항 제1호).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환수처분을 받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해서 처분을 한 날로부터 5년간 해당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8조 제4항).

포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보조의 대상 및 방법, 보조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시·도의 조례로 위임하고 있을 뿐, 보조금 지원 대상 제외에 대하여는 조례에 위임하지 않습니다. 설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보조금 환수에 대한 규정을 고려하더라도 역시 보조금 지원 대상 제외에 대하여는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조례에 근거한 이 사건 제외처분의 하자는 위법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3. 처분사유 추가 전 이 사건 제외처분의 법적 성질

가. 법리

1. 합격의 법학원 관리반 수강생 제공용(내용에 관한 문의 시 담당 팀장님에게 문의)
2. 무단전재, 배포, 양도, 개인이나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상 게재 금지

판례 : 기속행위, 재량행위 구별에 관한 판례이므로 판례번호만 기재함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나. 포섭

참조조문
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환수처분을 받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해서 처분을 한 날로부터 5년간 해당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8조 제4항).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8조 제3항 제1호).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포섭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리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환수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운수사업자를 5년간 해당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5년간”은 ‘5년 이내의 범위’ 등의 경우와 달리 5년의 기간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청의 재량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습니다.[10)] 따라서 위 문언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제외처분은 기속행위에 해당합니다.

4. 처분사유 추가의 위법성

가. 처분사유 추가의 가능 여부

1) 법리

판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두38465 판결). 기속행위, 재량행위 구별에 관한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10) 공직선거법에서 주로 찾을 수 있는 표현으로 선거운동기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경우 ‘~일간’으로 규정하고 이는 해당 기간 전체를 의미한다. ‘~일 이내’의 취지인 경우에는 문언으로 ‘~일 이내’, ‘~일 이내의 범위’ 등으로 규정한다.

1. 합격의 법학원 관리반 수강생 제공용(내용에 관한 문의 시 담당 팀장님에게 문의)
2. 무단전재, 배포, 양도, 개인이나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상 게재 금지

2) 포섭

참조조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지방보조사업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1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환수결정을 받은 경우

포섭
처분사유로 추가된 지방보조사업법은 보조금 환수처분이 있는 경우 피처분자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위 문언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제외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합니다. 처분사유 추가 시 이 사건 제외처분의 법적 성질이 기속행위에서 재량행위로 변경되므로 이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사유 추가는 위법합니다.

나. 재량권 불행사

1) 법리

법률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행정기본법 제17조).

판례
앞서 본 피고의 근거 법령 추가로 인하여 원고로서는 당초 위반행위의 존재 또는 근거 법령의 위헌·위법 여부만 다투면 되었던 것이 처분 당시 예상하지 못하였고 사전에 반론을 제기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였던 피고의 재량권 행사 여부 및 재량 판단에 대하여 소송상 공방을 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더욱이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이 사건 제외처분의 근거 법령을 당초의 기속행위에 관한 규정에서 재량행위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거나 재량행위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다는 사정은 피고 스스로 이 사건 제외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써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전혀 비교형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재량권 불행사는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해당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위법사유가 된다(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두38465 판결).

1. 합격의 법학원 관리반 수강생 제공용(내용에 관한 문의 시 담당 팀장님에게 문의)
2. 무단전재, 배포, 양도, 개인이나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상 게재 금지

2) 포섭

참조조문
지방보조사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제외기간 또는 지방보조금의 지원 대상 제외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지방보조사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1.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5년

포섭
참조조문에 의하면 위반행위가 창소년 할인실적 자료의 오류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는 처분을 2분의 1 범위에서 기간을 줄일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판단이 없던 점, 원고는 피고가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법을 처분사유로 추가하여 처분 당시 예상하지 못하였고 사전에 반론을 제기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였던 피고의 재량권 행사 여부 및 재량판단에 대하여 소송상 공방을 하여야 하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외처분은 그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써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전혀 비교형량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재량권 불행사에 해당하여 위법취소되어야 합니다.

5. 처분사유 추가가 적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한 예비적 항변
가. 적용법령에 대한 검토
1) 법리

법리
새로운 법령등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행정기본법 제14조 제1항).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

2) 포섭

참조조문
「지방보조사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16.] [법률 제19998호, 2024. 1. 15. 제정]

1. 합격의 법학원 관리반 수강생 제공용(내용에 관한 문의 시 담당 팀장님에게 문의)
2. 무단전재, 배포, 양도, 개인이나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상 게재 금지

「지방보조사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2. 16.] [대통령령 제34116호, 2024. 2. 16. 제정]

포섭
원고는 2022. 1. 6.부터 2024. 1. 5.까지의 청소년 할인실적 보조금을 수령하였습니다. 피고가 추가한 법령은 그 이후인 2024. 1. 15. 제정되어 2. 16.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위 법령은 효력 발생 전에 종결된 청소년 할인실적 보조금에 대하여 적용될 수 없고, 법위반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에 관한 점을 고려하여도 행위 당시에 위 법령이 없던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적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 재량행위 해당 여부

1) 법리

판례
구 청소년보호법(1999. 2. 5. 법률 제5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법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0조 [별표 6]의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처분기준은 법규명령이기는 하나 모법의 위임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에 비추어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그 규모나 기간·사회적 비난 정도·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은 다른 사정·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및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이익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과징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수액은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5207 판결).

2) 포섭

참조조문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제외기간 또는 지방보조금의 지원 대상 제외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합격의 법학원 관리반 수강생 제공용(내용에 관한 문의 시 담당 팀장님에게 문의)
2. 무단전재, 배포, 양도, 개인이나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상 게재 금지

1.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5년 2.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년 3.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년

포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고 제재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그 수액은 최고한도액이고,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근거한 처분은 그 문언상 재량행위에 해당합니다.

다.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

1) 법리

법률
행정작용은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이라는 원칙에 따라야 한다(행정기본법 제10조).

2) 포섭

포섭
이 사건 제외처분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유효하고 적절합니다. 그러나 피고가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의 실수로 타 회사의 청소년 할인실적의 일부가 추가되었고, 이는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최고한도인 5년을 제한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한 사익 침해가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외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입니다.

6.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제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합니다.

1. 합격의 법학원 관리반 수강생 제공용(내용에 관한 문의 시 담당 팀장님에게 문의)
2. 무단전재, 배포, 양도, 개인이나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상 게재 금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헌법 부분)

① 메모

1. 표 그리기

이름	대상	적법(재/전)③	본안④
김청경			

사건①

신청취지②

관할법원⑤

1. 합격의 법학원 관리반 수강생 제공용(내용에 관한 문의 시 담당 팀장님에게 문의)
2. 무단전재, 배포, 양도, 개인이나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상 게재 금지

2. 핵심 부분

가. 법률상담일지

이름	대상	적법(재/전)③	본안④
김청경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과정에서 징계처분의 근거가 되는 청원경찰법 조항의 위헌성		2020.2.1. 청원경찰 임용 2024.1.6. 의뢰인이 타인 폭행 2024.7.18. 춘천지법강릉지원 벌금50 약식명령(2024고약1183) 이후 확정 2024.11.21. 군포시장이 정직 2월 징계처분(청원경찰법)

사건①
신청취지②
관할법원⑤

나. 내부회의록

이름	대상	적법(재/전)③	본안④
김청경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과정에서 징계처분의 근거가 되는 청원경찰법 조항의 위헌성 징계처분의 근거조항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1055호 징계처분 취소소송 평등적 전치주의 ×	2020.2.1. 청원경찰 임용 2024.1.6. 의뢰인이 타인 폭행 2024.7.18. 춘천지법강릉지원 벌금50 약식명령(2024고약1183) 이후 확정 2024.11.21. 군포시장이 정직 2월 징계처분(청원경찰법) 청원경찰의 법적 지위 - 휴가중 행위(인용, 경비 부담, 근무상황 감독, 교육 등 고려) 기본권 제한 - 직무수행 자체 제한× - 품위에 어긋나는 행동 제한○ 명확성원칙 위반 - 국가공무원 품위 판례의 적용 가부 - 복무규정 완화(품위유지의무에서 제외) 법률유보원칙 위반 - 징계절차 중요사항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 구체적 위임 없음 평등원칙위반 ×

사건①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1055호
신청취지②
관할법원⑤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1. 합격의 법학원 관리반 수강생 제공용(내용에 관한 문의 시 담당 팀장님에게 문의)
2. 무단전재, 배포, 양도, 개인이나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상 게재 금지

3. 기타기록

이름	대상	적법(재/전)③	본안④
김청경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과정에서 징계처분의 근거가 되는 청원경찰법 조항의 위헌성 징계처분의 근거조항 정직 2월 청원경찰법5의2①(2)[11] 폭행함으로써 청원경찰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함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1055호 징계처분 취소소송 필요적 전치주의 ×	2020.2.1. 청원경찰 임용 2024.1.6. 의뢰인이 타인 폭행 2024.7.18. 춘천지법강릉지원 벌금50 약식명령(2024고약1183) 이후 확정 2024.11.21. 군포시장이 정직 2월 징계처분(청원경찰법) 청원경찰의 법적 지위 - 휴가중 행위(임용, 경비 부담, 근무상황 감독, 교육 등 고려) 기본권 제한 - 직무수행 자체 제한× - 품위에 어긋나는 행동 제한○ 명확성원칙 위반 - 국가공무원 품위 판례의 적용 가부 - 복무규정 완화(품위유지의무에서 제외) 법률유보원칙 위반 - 징계절차 중요사항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 구체적 위임 없음 평등원칙위반 ×

사건①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1055호
신청취지②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관할법원⑤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4. 참조조문

가. 위헌대상이 법률인 경우 : 법률조항(소위 심판대상조항) 특정
법률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는 것이므로 법률을 특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징계처분의 근거조항”이 키워드이므로 징계의결서에 기재된 근거조항인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으로 특정한다. 또한, 조항 중 일부를 택하여야 할 수 있는데 징계의결서에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동일, 유사하게 규정하는 법률로 특정하면 된다. 사안에서는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11) 30~32면

1. 합격의 법학원 관리반 수강생 제공용(내용에 관한 문의 시 담당 팀장님에게 문의)
2. 무단전재, 배포, 양도, 개인이나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상 게재 금지

나. 기록 작성에 필요한 부분

이 문제는 기본권 제한, 명확성원칙 위반, 법률유보원칙 위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에 관하여 전부 청원경찰법에 근거하여 논하도록 규율하므로(일부 전제가 되는 청원경찰의 지위 역시 청원경찰법에 근거하여 논하여야 함) 관련 조항을 판단하면 된다. 간단히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위헌사유	조항
기본권 제한 - 품위에 어긋나는 행위 제한	심판대상조항 청원경찰의 지위 관련 조항 청원경찰법 제5조, 제6조, 제9조의3
명확성원칙 위반 - 청원경찰에게 국가공무원법상 품위근거규정 적용 가부	심판대상조항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8조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58조제1항, 제60조, 경찰공무원법 제24조 위 시행령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는 준용×(품위손상을 이유로 징계하는 규정 적용×)
법률유보원칙 위반	심판대상조항 청원경찰법 제8조 제2항 내지 제6항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심판대상조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후
기본권 제한의 경우 심판대상조항 중 '품위에 어긋나는 부분'에 근거하여, 명확성원칙 위반의 경우 '품위'의 개념이 불확정적이고 국가공무원법상 해석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법률유보원칙 위반의 경우 징계는 기본권 보호에 중대한 부분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직접 규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의 경우 위임 필요성 및 대통령령 위임 부분만으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없다는 취지로, 각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따른 차이점을 고려하여 작성할 것을 권한다.	

1. 합격의 법학원 관리반 수강생 제공용(내용에 관한 문의 시 담당 팀장님에게 문의)
2. 무단전재, 배포, 양도, 개인이나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상 게재 금지

② 내용 작성

1. 형식적 기재사항

사건①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1055호
신청취지②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관할법원⑤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2. 적법요건

가. 작성 가이드

적법요건별로 목차를 잡습니다. 작성은 행정소장의 경우와 동일, 유사합니다.

나. 메모 및 작성방법

이름	대상	적법(재/전)③	
김청경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과정에서 징계처분의 근거가 되는 청원경찰법 조항의 위헌성 징계처분의 근거조항 **정직 2월** **청원경찰법5의2①(2)**[12] **폭행함으로써 청원경찰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함**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1055호 징계처분 취소소송 필요적 전치주의 ×	결론 : 인정 이유 : 구체적 사건 계속중, 소송에 심판대상조항 적용, 위헌 시 취소소송 인용

메모를 세로로 쓴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12) 30~32면

1. 합격의 법학원 관리반 수강생 제공용(내용에 관한 문의 시 담당 팀장님에게 문의)
2. 무단전재, 배포, 양도, 개인이나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상 게재 금지

다. 목차 및 내용

③ 1. 재판의 전제성

1. 법리

법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결정례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현재 계속 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 함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 사건의 재판의 주문이나 결론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이어야 하나, 비록 재판의 주문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론을 이끌어 내는 이유를 달리 하는 데 관련되어 있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법재판소 1993. 11. 25. 선고 92헌바39 전원재판부 결정).

2. 포섭

포섭
신청인이 청구한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1055호 징계처분취소소송이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에 현재 계속 중이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징계처분의 근거조항으로서 이 위 소송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면 법원은 신청인의 취소청구를 인용하여야 하므로, 당해 사건의 재판의 주문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됩니다.

1. 합격의 법학원 관리반 수강생 제공용(내용에 관한 문의 시 담당 팀장님에게 문의)
2. 무단전재, 배포, 양도, 개인이나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상 게재 금지

3. 본안

가. 메모 및 작성방법

이름	대상	본안④	
김청경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과정에서 징계처분의 근거가 되는 청원경찰법 조항의 위헌성 징계처분의 근거조항 정직 2월 청원경찰법5의2①(2)[13] 폭행함으로써 청원경찰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함	2020.2.1. 청원경찰 임용 2024.1.6. 의뢰인이 타인 폭행 2024.7.18. 춘천지법강릉지원 벌금50 약식명령(2024고약1183) 이후 확정 2024.11.21. 군포시장이 정직 2월 징계처분(청원경찰법) 청원경찰의 법적 지위 - 휴가중 행위(임용, 경비 부담, 근무상황 감독, 교육 등 고려) 기본권 제한 - 직무수행 자체 제한× - 품위에 어긋나는 행동 제한○ 명확성원칙 위반 - 국가공무원 품위 판례의 적용 가부 - 복무규정 완화(품위유지의무에서 제외) 법률유보원칙 위반 - 징계절차 중요사항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 구체적 위임 없음 평등원칙위반 ×	결론 : 기본권 침해(과잉금지원칙 위반), 명확성원칙, 법률유보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각 위반

나. 목차 및 내용

④ 2.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1. 심판대상조항[14]

청원경찰법 제5조의2 ①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2. 기본권 침해

가. 제한되는 기본권

1) 법리

---

13) 30~32면

14) 이와 같이 특정할 경우 위헌 대상이 되는 내용은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가 된다. 법률상담일지, 내부회의록 등을 고려하면 별도로 일부분을 특정하지는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1. 합격의 법학원 관리반 수강생 제공용(내용에 관한 문의 시 담당 팀장님에게 문의)
2. 무단전재, 배포, 양도, 개인이나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상 게재 금지

법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10조).

결정례
헌법 제10조 전문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행복추구권은 그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포함한다.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개인이 행위를 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하여 자유롭게 결단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에 관한 사항은 스스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일반적 행동자유권에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 즉, 부작위의 자유도 포함되며,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 일반조항적인 성격을 가진다(헌법재판소 2007. 3. 29. 선고 2005헌마1144 전원재판부 결정).

2) 포섭

포섭
심판대상조항은 청원경찰이 품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율하므로 청원경찰인 신청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을 제한합니다.

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1) 법리

법률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법 제37조 제2항).

결정례
과잉금지의 원칙은 국가작용의 한계를 명시하는 것인데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보호하려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더 커야 한다는 것으로서 그래야만 수인의 기대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어느 하나에라도 저촉되면 위헌이 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이다(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8헌가13 전원재판부 결정).

2) 포섭

1. 합격의 법학원 관리반 수강생 제공용(내용에 관한 문의 시 담당 팀장님에게 문의)
2. 무단전재, 배포, 양도, 개인이나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상 게재 금지

포섭
①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 심판대상조항은 청원경찰이 직무수행 중에 품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징계를 규율하고 있으므로 그 목적이 정당하고 그 수단이 적절합니다. ② 침해의 최소성 청원경찰의 복무규정이 완화된 점, 청원경찰법 시행령에 의하여 형법이나 청원경찰법에서 정한 부분 외에는 국가공무원법이나 경찰법 적용되지 않는데 심판대상조항은 형법이나 청원경찰법에서 적용한 것이 아닌 점, 청원주와 청원경찰 간의 관계가 사법관계인 점을 종합하면, 담당자 교육 등을 선행한 후 재차 위반 시 처벌하는 등 침해를 최소화하는 수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품위를 지키지 않았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여러 수단 중 가장 과중한 수단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됩니다. ③ 법익의 균형성 품위 손상행위 시 바로 징계하도록 규정하여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사익의 침해가 중대한 반면,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15]

다. 소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기본권을 침해합니다.

3. 명확성원칙 위반

가. 법리

결정례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와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 다시 말하면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는데,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 입법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하게 되므로, 결국 법규범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19헌바530 전원재판부 결정).

15) 침해의 최소성 내용과 목적의 정당성 내용을 '~반면'으로 연결하여 작성하면 쉽게 작성할 수 있다.

1. 합격의 법학원 관리반 수강생 제공용(내용에 관한 문의 시 담당 팀장님에게 문의)
2. 무단전재, 배포, 양도, 개인이나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상 게재 금지

나. 포섭

포섭
심판대상조항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대하여 징계를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품위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으로서, 공무원이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라는 지위와 그 법률에 근거한 업무를 부여받아 개념이 구체화되는 것에 반해 청원경찰은 사법관계로서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법률유보원칙 위반
가. 법리

결정례
법치주의는 행정작용에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의 근거가 요청된다는 법률유보를 그 핵심적 내용의 하나로 하고 있다.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은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입법자가 스스로 규율하여야 하는 사항이 어떤 것인가는 일률적으로 획정할 수 없고, 구체적 사례에서 관련된 이익 내지 가치의 중요성, 규제 내지 침해의 정도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적어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할 때에는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한 한 입법자가 법률로써 스스로 규율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19헌바530 전원재판부 결정).

나. 포섭

포섭
심판대상조항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항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제한의 내용을 법률에서 정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징계의 효력에 관하여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징계의 수준이나 기간 등을 규정하는 효력 부분은 국민의 자유나 권리 제한의 본질적인 부분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합니다.

1. 합격의 법학원 관리반 수강생 제공용(내용에 관한 문의 시 담당 팀장님에게 문의)
2. 무단전재, 배포, 양도, 개인이나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상 게재 금지

5.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가. 법리

법률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헌법 제75조 제1항).

판례
헌법재판소는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분에 관하여 “입법권은 원칙적으로 입법자에게 속하나, 입법자가 사회변화에 따라 급속도로 증가하는 법규사항의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므로 헌법은 제75조, 제95조를 통해 입법권을 부분적으로 위임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위임의 필요성은 소송절차 등 법원의 사무에 관한 사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소송절차 등 법원의 사무에 관한 사항은 지극히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로서 입법자가 이에 관한 모든 사항을 직접 규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한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사항들은 사법실무에 정통한 대법원에서 정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며, 이는 상황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불가피하다. 따라서 헌법이 위임입법의 형태로 제75조와 제95조에서 대통령령, 총리령 또는 부령의 행정입법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와 같은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헌재 2004. 10. 28. 99헌바91 참조), 대법원 역시 입법권의 위임을 받아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4헌바456·457(병합) 결정). 또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 부분에 관하여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개별적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법률에 미리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둠으로써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의회입법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달성하고자 하는 헌법 제75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란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위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7. 2. 20. 선고 95헌바27 전원재판부 결정).

1. 합격의 법학원 관리반 수강생 제공용(내용에 관한 문의 시 담당 팀장님에게 문의)
2. 무단전재, 배포, 양도, 개인이나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상 게재 금지

나. 포섭

포섭
심판대상조항은 징계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어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원경찰의 경우 청원경찰법 시행령에 의하여 형법이나 국가공무원법상 규정된 몇몇 조항 외에는 해당 규정들을 준용하지 않으므로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절차 등이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될지 그 대강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합니다.

6. 소결

심판대상조항은 신청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을 침해하고, 위 각 원칙을 위반하여 헌법에 위반됩니다.